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27 | January 2025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KC

Contents

법인세법

4

- [판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건 (납세자승)
- [판례]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예규]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

- [예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소득세법

10

- [판례]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심판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경정)

부가가치세법

14

- [판례]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 [예규] 고가양도(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판단 시 양도하는 재산가액이 시가 또는 대가인지 여부
- [예규] 전환상환우선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Contents

종합부동산세법

17

- [판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일부납세자승)

관세법

20

- [심판례] 쟁점물품(백킹 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 플레이트)을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궤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 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 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기각)

법인세법

[판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건 (납세자승)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34688 판결

[사안]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2012 사업연도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원고의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2008 사업연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 5호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세무조정하지 않음) 등을 한 다음, 2010 사업연도의 결손금과 2012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각각 감액경정하고(그 결과 2012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경정), 이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2015. 10. 15.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가, 2016. 7. 15. 그 일부를 감액경정·고지함(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판단] (2008, 2012 사업연도 결손금 관련 주장) 원고는 2008 및 2012 사업연도 결손금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연도별 적정한 과세표준 및 결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개정 법인세법”)은 제13조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음(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이 사건 후문조항”)도 동일한 취지임). 이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참조), 개정 법인세법 부칙은 제1조에서 해당 법률의 시행일을 2010. 1. 1.로 정하면서, 제4조 본문에서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법인세법 시행 이후에는 이 사건 후문조항에서 정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해당하여야 그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문언과 달리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하지는 않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까지 이 사건 후문조항에서 정한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단] (2010 사업연도 결손금 관련 주장) 법인세법 제70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 계속 청장은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2016. 12. 27. 국세청훈령 제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는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경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음(위 대법원 2017두63788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투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코멘트]

- 원심은 2008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의 결손금 증액경정청구기간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 3년 후인 2012. 3. 31. 및 2014. 3. 31.까지이고, 이 사건 처분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2016. 7. 15.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2008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3. 선고 2019누10101 판결), 대상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함.

[판례]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두55203 판결

[사안] 금융지주회사인 원고는 A사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 상품·서비스 개발 및 전산화, 서버 안정화, 고객정보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B사 등(“수탁업체”)에 위탁하고 개발비용으로 약 576억 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위 개발비용 중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인건비 합계 30,246,657,650원(“쟁점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및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판단] 구 조특법은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 등을 전담부서 등 위탁적격기관에 위탁한 때에 한하여 그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을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적격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데,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의 인정기준은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의 의미는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연구개발활동’의 의미와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종래 조특법은 쟁점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연구개발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다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면서 연구개발에 관한 정의규정인 제9조 제5항을 신설하였는데, 당시 개정이유는 연구개발의 정의 및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 즉 OECD의 연구개발조사를 위한 표준지침인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의 연구개발 개념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프라스카티 매뉴얼에서 정한 연구개발의 정의가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함. 따라서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또한, 구 조특법이나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은 ‘과학기술’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 및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과학기술’이란 ‘자연과학 및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구 조특법에서 쟁점 세액공제 제도를 둔 것은, 연구개발은 그 속성상 기업의 수익 발생과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행착오나 실패의 위험

[판단] 이 따르므로 결과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계속** 것에서 더 나아가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에 따른 시행착오나 실패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세제 지원이라는 안전장치 또는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연구개발, 그중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함. 위와 같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자연과학 및 그 적용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므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활동의 목표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개발한 것인바,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설령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로 인하여 기존에 수립된 A사의 업무 절차, 시스템 및 서비스의 주요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A사가 영위하는 금융보험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바,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코멘트]

- 원심은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여부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관한 기존의 지식 또는 기술의 수준이 해당 연구개발을 통하여 진보·발전하였는지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이미 수립된 절차, 시스템, 서비스의 주요한 개선을 이루는 경우에도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그 개발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등 정보기술의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수립된 A사의 업무절차, 시스템, 서비스의 주요한 개선을 이루어 A사의 금융보험기술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42370 판결), 대법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함.
-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범용 소프트웨어 도구 등을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일부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변경한 사정을 종합하여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수탁업체의 전담부서등이……이 사건 시스템의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0누23216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음(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48359 판결).

[예규]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 2024. 12. 24.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 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코멘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는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제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2항 제2호에서는 ‘분할대가’에 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분할합병의 대가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분할대가를 구성하는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국내모회사 한정),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를 자산의 취득가액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제5호(……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8호(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가 적용되는지 문제됨.**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받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74, 2021. 4. 29.).
- 결국 대상예규는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받은 외국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제8호(시가)가 아니라 제5호(종전 장부가액)가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예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5, 2024. 12. 26.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내국인에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코멘트]

-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해외 지주회사의 누적결손금이 많아 특정외국법인인 손회사 등으로부터 실제로 배당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내국인이 국조법 제17조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지분 중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 2011. 4. 22.).

소득세법

[판례]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사안]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연 2회(1월 1일, 7월 1일) 일정한 복지포인트(“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왔으며,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원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물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하여 사용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202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 72,838,16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판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코멘트]

- 1심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고, 법률의 문언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아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10092 판결), 원심은 근로소득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10852 판결), 대법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함.

[심판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경정)
 조심 2024전3096, 2024. 11. 7.

[사안] 청구인들은 가상자산의 매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A사(“청구외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입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거래수수료를 지급하였음. 청구외법인은 2018. 8. 25.부터 3회에 걸쳐 특정기간에 소진한도 이내에서 거래 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페이백(시즌1)하거나 일정기간 거래금액 상위자에게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차등지급(시즌2 및 시즌3)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음. 청구인들은 위 이벤트를 통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 및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지급받았으나(시즌1을 통해 지급받은 현금 및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합한 가액을 “쟁점①금액”이라 하고 시즌2·시즌3을 통해 지급받은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의 가액을 “쟁점②금액”이라 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음. 한편, 청구외법인은 위 지급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비용으로 계상(시즌1의 거래수수료의 100% 지급액에 대해서는 매출에누리로, 나머지 거래수수료의 20% 상당액은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원천징수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이벤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급자가 거래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도 에누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외법인이 거래수수료 상당액의 반환을 미리 공지한 점, 이벤트 실시 기간에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누구나 수수료 반환이 적용된 점,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던 거래수수료를 사전 약정대로 반환(당시 청구외법인은 매입 시에는 가상자산으로, 매출 시에는 현금으로 거래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음)받은 것을 두고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불합리한 점, 수수료를 거래 당시에 직접 면제받지 아니하고 익일에 다시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출에누리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시즌 1 이벤트와 관련한 쟁점①금액 중 청구인들이 부담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그 다음날 반환받은 거래수수료 100% 상당액은, 이를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매출에누리 성격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다만,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환급받은 거래수수료 상당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20%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외법인의 시즌1 이벤트 내용을 보면 매일 소진한도가 정해져 있어 회원이 그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보다 선순위로 거래에 참여하여야 하는 경쟁적인 요소가 있고 이에 따라 순위에 드는 경우에만 20%를 추가지급받았으며, 동 가액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하였던 거래수수료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액수도 상당해 보이므로, 이 부분은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판단]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시즌2·시즌3이벤트의 경우 수수료 쿠폰을 구매한 회원만을 대
 _계속 상으로 하여 일정기간의 거래실적 상위자를 가려 그 순위대로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차별적으
 로 지급한 점, 청구인들은 사은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②금액은 경쟁을 통해 순위
 자에게만 지급되고 그 액수도 상당하여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②금액을 지급한 청구외
 법인도 이를 매출차감(에누리, 할인)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
 면 쟁점②금액은 위 법령의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
 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또한, 가상자산의 취득·양도 시 수반되는 거래수수
 료는 원칙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되거나 공제될 성격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시즌2·시즌3의 경우 거래실적 상위
 자로서 상금으로 기타소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일견 거래수수료와 대응되는 측면은 없지 아니하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목적 없이 오로지 상금 획득만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거
 래하고 수수료를 지출한 점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벤트 당시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
 증하였다는 정도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어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수수료 지출액을 기
 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거래소가 회원에게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거래수수료로 수취하며 거래소의 거래량을 증진할 목적으로 거래 익일 고객의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율의 자체발행한 암호화폐를 지급한 경우(1차 거래), 자체발행한 암호화폐는 현금과 재산적 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거래소가 거래수수료를 당초 지급한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경우(2차 거래), 그 상당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그 금액이 미미하다고 보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음(조심 2020전2335, 2021. 11. 25.).
- 기재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량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여하여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상자산 거래에 소요된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 9. 5.).

부가가치세법

[판례]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 승)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2022두49991(병합) 판결

[사안]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이용자”)와 사이에,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보조금 또는 할인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원고가 직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왔음.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대리점”)는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였고, (i) 그 중 대부분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단말기(“원고 공급 단말기”)이고, (ii) 일부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를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제조사 유통 단말기”)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을 선택한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였음[(i)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되,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출고가격에서 원고가 공시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일시불 또는 할부 방식으로 판매하였고, 대리점이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 액수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은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 (ii)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대리점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납품받은 다음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출고가격에서 원고가 공시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일시불 또는 할부 방식으로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방식].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았다가 위 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이 사건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증액경정·고지함.

[판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나(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원고 공급 단말기 관련 위약금의 경우, 원심은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 이전의 합의가 있다고 실시한 부분 등 이유

[판단]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자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계속 직접 지급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원고 또한 대리점과의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에 따라 이를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그러나,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의 경우, 원고는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이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공급대가의 추가 지급액으로서 원고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의 내용, 이용자의 원고에 대한 월 납부액 구성내역,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에서의 원고 지위와 역할 등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 대리점, 이용자가 3면 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말기 공급거래와 무관한 원고의 입장에서 재화의 공급 없이 받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부분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코멘트]

- 원심은 원고 공급 단말기와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구분 없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수원고등법원 2022. 6. 10. 2021누11117, 2021누11124 판결), 대상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예규] 고가양도(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판단 시 양도하는 재산가액이 시가 또는 대가인지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162, 2024. 12. 19.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丙에게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자인 甲과 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 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코멘트]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甲과 乙(甲의 배우자)이 공동 소유한 A주택과 丙(甲의 母)이 소유한 B주택을 교환하였는데, 甲과 乙은 A주택 각 50% 지분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丙은 B주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대상예규의 질의자는 甲과 乙이 특수관계인 丙(甲의 母)과 시가가 다른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법정 기준금액(시가×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바, 이 때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시가'가 甲과 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인지 甲과 乙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인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예규] 전환상환우선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4-자본거래-1756, 2024. 12. 24.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사례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코멘트]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한 법인이 전환상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전환당시 전환률이 1:1이 아닌 1:0.8916이 되어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00510-1호, 2005. 1. 6.)는 등기선례에 따라 바로 전환하지 못하고, 전환상환우선주 일부를 발행회사에 무상이전한 뒤 발행회사가 소각하는 과정을 거쳐 전환률을 1:1로 맞춘 후 보통주로 전환하였음.
- 대상예규의 질의자는 법령상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판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일부납세자승)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55235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일대를 정비구역(“이 사건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8.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3. 1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8. 5. 2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거쳐 2019. 5. 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음.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 및 토지 중 아파트 분양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주택 266호(건물 15,966.65㎡, 토지 10,946.48㎡, “이 사건 주택”)이라고하고, 그 중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부속토지”)와 토지 40필지(5,270.68㎡,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금청산 절차를 거쳐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피고는 2020.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귀속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이 사건 처분”).

[판단]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 관련)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3항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에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 후 예정된 철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철거보상계약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협의취득으로서의 사법상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용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보상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내지 공탁된 경우에는 철거보상계약이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은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한 후 정비구역 내 토지에 신 주택을 건축하여 그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한다는 재개발사업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외형상으로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전의 재산적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서 정한

[판단]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년도가 2020년일 뿐만 아니라, 최종 수용의 개시일도 2020. 4. 17.이므로, 2020년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미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 보상계약이 이루어진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1. 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 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조합인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건물(건축물) 부분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인 2020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 관련)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주택 중 비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주택의 건축물 부분’과 ‘건축물이 아닌 부속토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비과세의 대상을 전자에 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들 규정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기반을 두고 원칙적으로 재산세와 과세대상을 같이 하되(다만 건축물 중에서는 과세대상이 주택에 한정된다)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하는 조세인바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의 부속토지가 사실상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주택 건물 부분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경우에도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코멘트]

- 대상판결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비과세 규정은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조항으로 건축물의 소유권이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등으로 이전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주택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18서1071, 2019. 4. 9., 조심 2020인 2795, 2020. 11. 20. 등).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 2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판결은 철거·멸실예정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니라 주택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것으로 보임.

관세법

[심판례] 쟁점물품(백킹 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 플레이트)을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24관0134, 2024. 12. 12.

[사안] 청구법인은 2019. 1. 10.부터 4. 9.까지 보세공장에서 수입한 구리 합금과 텅스텐·규소 등의 타겟이 결합된 WSI Target Plate(쟁점①물품), 구리 타겟이 결합된 COPPER Target Plate(쟁점②물품), 티타늄 타겟이 결합된 TI Target Plate(쟁점③물품), 철강 타겟이 결합된 STEEL Target Plate(쟁점④물품)를 각각 HSK 제8101호, 제7419호, 제8108호, 제7326호로 신고하여 기본관세율 8%를 적용받고 해당 신고는 처분청에 의해 수리됨. 관세청장은 2023. 12. 5. 각 쟁점물품과 유사한 변경고시물품에 대해,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보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이 있는 구성요소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함. 본질적 특성을 백킹 플레이트로 보아 해당 변경고시물품을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제8486호로 변경고시함. 이후 청구법인은 2024. 1. 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24. 5. 17.부터 6. 3.까지 쟁점①물품을 HSK 제6909호(공업용 도자제품, 기본관세율 8%)로, 쟁점②·③·④물품을 각각 HSK 제7419호, 제8108호, 제7326호(구리·티타늄·철강 제품)로 분류함. 청구법인은 2024. 3. 8.부터 4. 9.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있으며,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분품으로서 HSK 제848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쟁점처분)하였음. 이에 청구법인은 2024. 6. 4., 8. 2.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수입되었고 쟁점물품 전체가 반도체 제조용 증착기에 장착되어 진공 및 플라즈마 형성, 웨이퍼에 박막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코멘트]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타겟’에 있다고 보고, 타겟의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관세법은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신고 시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수입된 점과 쟁점물품 전체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장착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을 제8486호의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기업은 수입신고 시 물품의 상태와 용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본 사례에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변경고시물품의 분류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이와 상충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에 혼선을 초래함. 이에 따라 기업은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과세당국의 처분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

[심판례]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4관0116, 2024. 12. 17.

[사안] 청구인 A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B'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며, 청구법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설립되어 촬영장비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함. 청구인들은 2021. 1. 4.부터 2022. 1. 3.까지 중국 배송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카메라와 조명 등 6,190점(시가 000원)을 목록통관 대상으로 위장해 밀수입함. 청구인 A는 2021. 1. 4.부터 5. 5.까지, 주식회사 A는 2021. 5. 6.부터 2022. 1. 3.까지 밀수입에 관여함. 이에 처분청은 2022. 4.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인들을 고발하였고, 형사판결에 따라 2024. 2. 16. 법원은 청구인 A에게 벌금 000원 및 선고유예(징역 1년, 추징금 000원), 주식회사 A에게 벌금 및 추징금 000원을 선고함. 선고와 별도로 처분청은 2024. 6. 14. 청구인 A에게 관세 등 000원, 주식회사 A에게 관세 등 000원(총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함. 이에 청구인들은 2024. 7. 17.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청구인 등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관세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추징금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 실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는 등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코멘트]

-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해 정확한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사례에서 청구인들은 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하여 목록통관을 악용하였으며, 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관세 추징으로 이어짐. 기업은 수입 신고 시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물품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히 신고하여 법적 리스크를 방지해야 함.
- 특송물품의 목록통관은 소액 물품에 대한 간소화 절차로 제한되나, 이를 허위로 악용하면 밀수입으로 간주됨. 본 사례는 물품 가격을 조작해 목록통관을 진행한 것이 법적으로 적발된 경우로, 기업은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함.
- 본 판례는 형사판결에 따른 처분과 별도로 행정적 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형사 처벌과 관세 부과 처분이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기업은 이를 통해 법령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해야 함.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궤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기각)
 조심 2024관0057, 2024. 12. 12.

[사안] 청구법인은 2019. 1. 3.부터 2022. 12. 21.까지 1,486건의 수출신고를 통해 FILTER RODS(이하 "쟁점물품")를 HSK 제5601.22-0000호로 신고하여 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 2019. 4. 12.부터 2022. 12. 28.까지 관세 000원을 환급받음. 또한, 2022. 3. 29.부터 3. 30.까지 쟁점물품을 A(주)에 양도하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했고, 이를 통해 A(주)도 관세 000원을 환급받음. 2022. 5. 2.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으며, 청구법인도 5. 13.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WCO HSC 검토의견서, 관련 고시, 시험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음. 처분청의 시험 결과, 쟁점물품 내부층에서도 '트리아세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 품목분류 고시와 제5601호 HS해설서 단서 규정에 따라, 응집제가 내부층까지 침투한 경우 제5603호 부직포로 분류하도록 규정된 점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제5601호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WCO HSC 사례는 내부 침투 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제5601호로 분류된 동일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쟁점물품은 제6307호의 용어와 HS해설서를 근거로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제품으로 간주되어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됨. 이에 따라, 2023. 11. 7. 해당 분류가 확정되었고, 11. 13. 처분청과 청구법인에 회신되었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다환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23. 12. 26. 관세 000원과 과다환급가산금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징수·고지함(이하 "쟁점처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3. 22.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투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투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이는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코멘트]

- 본 사례는 품목분류의 정확성에 따른 관세 환급 및 과다환급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보여줌. 기업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 관련 HS해설서와 국내외 사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시험 성적서, 분석 보고서 등)를 사전에 준비해야 함.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 및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은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행정적 절차임. 기업은 불확실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여 추후 환급금 문제나 과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주미현

S.Manager

T. 02.2112.4602

E. mihyunjoo@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박재현

Manage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주정연

Manage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